힐스테이트 도안 2차(4블록) 오피스텔 입주자모집 분양광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4, 667-5
■ 공급대상 : 오피스텔 258호실 (84타입 258호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도안2차 오피스텔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일정 안내, 청약 안내, 상품 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은 힐스테이트 도안 2차 홈페이지(http://www.hillstate-hec.co.kr/doan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단지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업무시설로, 주택과 다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연락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 착용자 -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힐스테이트 도안2차 오피스텔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42-825-9001) 등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은 본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피스텔 분양광고 미숙지, 청약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0.02.2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적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0.11.26.)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0.11.25.)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 1년 이상 계속하여 분양신고일(2020.11.25.)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함.(단 거주자우선공급은 중복청약을 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절차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여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로 포함합니다.

블록	군	타 입	분양호실(수)	신청자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 공급 호실		
4블록	1군 (최상층, 14층)	84A	4	4	16	32	※ 1인 1건씩 청약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84A-1	4				
		84B	8				
	2군 (기준층, 6~13층)	84A	32		128		
		84A-1	32				
		84B	64				
		84C	32				
	3군 (다락층, 2~5층)	84A	16	15	63		
		84A-1	16				
		84B	14				
		84C	14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는 인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동일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258호실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별 1건씩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3개 군으로 3건의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2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상기 84A, 84A-1, 84B 타입은 1개 타입당 1실씩 공급되며 84C 타입은 2실이 공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 오피스텔 84C타입은 주거용 오피스텔 1실과 업무시설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1실과 업무시설 1실을 분리하여 분양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 시 제출하신 청약 관련 개인정보를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오피스텔 입주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 청약신청 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청약신청 시 제출하신 청약 관련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청약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를 제외하고 청약신청 시 입력하신 생년월일 및 휴대폰 번호 뒷 4자리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하오니 청약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2차(7블록) 오피스텔 입주자모집 분양광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1, 667-2
■ 공급대상 : 오피스텔 258호실 (84타입 258호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힐스테이트 도안2차 오피스텔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일정 안내, 청약 안내, 상품 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은 힐스테이트 도안 2차 홈페이지(http://www.hillstate-hec.co.kr/doan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단지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업무시설로, 주택과 다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연락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 착용자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측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힐스테이트 도안2차 오피스텔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42-825-9001) 등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은 본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피스텔 분양광고 미숙지, 청약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0.02.2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적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0.11.26.)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0.11.25.)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 1년 이상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함.(단 거주자우선공급은 중복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절차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여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블록	군	타 입	분양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 공급 호실		
7블록	1군 (최상층, 14층)	84A	4	4	16	32	※ 1인 1건씩 청약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84A-1	4				
		84B	8				
		84C	32				
	2군 (기준층, 6~13층)	84A	4				
		84A-1	32				
		84B	64				
		84C	32				
	3군 (다락층, 2~5층)	84A	16				
		84A-1	16	15	63	128	
		84B	32				
		84C	14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및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258호실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별 1건씩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3개 군으로 3건의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2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분양광고 오피스텔 평형,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은 갑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 시 교부하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생활 대지사용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세대별, 근생/판매시설의 각 실별 대지사용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차이 등은 적정 할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향후 지분이 변동되는 일이 없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별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별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며 (2014.12.03. 개정)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외벽면적 등은 공용면적에 가산됩니다.
- 오피스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및 지상층 일부 공용부분 등 포함)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방재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균등한 분양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호실수는 시행위탁자 및 건축주관 시행위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의 위치에 따라 코어 및 계단실 등의 공용부의 형태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 납부 중도금액은 총 분양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중도금 납입일수 1일 이상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 및 등기비용 등을 준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제3자 명의로 입금 시 사전에 반드시 오피스텔 분양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하며, 환불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물 분양에 따른 취득 및 법적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전매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 35710호(2020.11.25.)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최초 : 2020-건축과 신축허가(2020.09.24))
■ 공급금액 및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1 외 1필지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시공업체 명칭 – 분양사업자 :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행사 : ㈜산림디벨퍼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시행위탁자 : (주)비에스디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주)무궁화신탁(시행수탁자)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7,100.900㎡(오피스텔 : 5,898.1324㎡)
- 건축물 연면적 : 55,368.1595㎡(오피스텔 : 46,652.901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4층~지하2층(기계전기실, 관리실, 주차장, 오피스텔 부대시설 등), 지하1층(기계전기실, 판매시설, 주차장 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오피스텔용 부대시설, 오피스텔 지상2층~지상14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14층 4개동 중 오피스텔 총 258호실
- 주차대수 : 418대(오피스텔 351대, 판매 및 근생시설 67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 목의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목원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구역 내 금지행위 행위제한 및 추가적인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등급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	S1	1.2	C	1	4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17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 대상 및 분양규모

군	타 입	분양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최상층, 14층)	84A	4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4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8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4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2군 (기준층, 6~13층)	84A	32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32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64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32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3군 (다락층, 2~5층)	84A	16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16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32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14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물은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우선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함.(단 거주자우선공급은 중복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절차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여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

블록	군	타 입	분양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 공급 호실		
7블록	1군 (최상층, 14층)	84A	4	4	16	32	※ 1인 1건씩 청약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84A-1	4				
		84B	8				
		84C	32				
	2군 (기준층, 6~13층)	84A	4				
		84A-1	32				
		84B	64				
		84C	32				
	3군 (다락층, 2~5층)	84A	16				
		84A-1	16	15	63	128	
		84B	32				
		84C	14				

■ 공동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및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258호실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별 1건씩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3개 군으로 3건의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2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분양광고 오피스텔 평형,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은 갑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 시 교부하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생활 대지사용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세대별, 근생/판매시설의 각 실별 대지사용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차이 등은 적정 할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향후 지분이 변동되는 일이 없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별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며 (2014.12.03. 개정)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외벽면적 등은 공용면적에 가산됩니다.
- 오피스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및 지상층 일부 공용부분 등 포함)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방재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균등한 분양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호실수는 시행위탁자 및 건축주관 시행위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의 위치에 따라 코어 및 계단실 등의 공용부의 형태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 납부 중도금액은 총 분양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중도금 납입일수 1일 이상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일일 및 장소,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 및 등기비용 등을 준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제3자 명의로 입금 시 사전에 반드시 오피스텔 분양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하며, 환불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물 분양에 따른 취득 및 법적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전매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 35710호(2020.11.25.)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최초 : 2020-건축과 신축허가(2020.09.24))
■ 공급금액 및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1 외 1필지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시공업체 명칭 – 분양사업자 : (주)무궁화신탁 / 분양대행사 : ㈜산림디벨퍼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시행위탁자 : (주)비에스디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주)무궁화신탁(시행수탁자)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7,100.900㎡(오피스텔 : 5,898.1324㎡)
- 건축물 연면적 : 55,368.1595㎡(오피스텔 : 46,652.9018㎡)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4층~지하2층(기계전기실, 관리실, 주차장, 오피스텔 부대시설 등), 지하1층(기계전기실, 판매시설, 주차장 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오피스텔용 부대시설, 오피스텔 지상2층~지상14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14층 4개동 중 오피스텔 총 258호실
- 주차대수 : 418대(오피스텔 351대, 판매 및 근생시설 67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 목의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목원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구역 내 금지행위 행위제한 및 추가적인 건축물 용도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등급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	S1	1.2	C	1	4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17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 대상 및 분양규모

군	타 입	분양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최상층, 14층)	84A	4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4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8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4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2군 (기준층, 6~13층)	84A	32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32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64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32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3군 (다락층, 2~5층)	84A	16	84.9879	33.5767	118.5646	62.0439	180.6085	22.8651
	84A-1	16	84.9879	33.2203	118.2082	62.0439	180.2521	22.8651
	84B	32	84.9454	34.1171	119.0625	62.0128	181.0753	22.8537
	84C	14	84.9959	34.0790	119.0749	62.0497	181.1246	22.8673

■ 거주자 우선공급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물은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우선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대전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함.(단 거주자우선공급은 중복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신청절차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여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

블록	군	타 입	분양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 공급 호실		
7블록	1군 (최상층, 14층)	84A	4	4	16	32	※ 1인 1건씩 청약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84A-1	4				
		84B	8				
		84C	32				
	2군 (기준층, 6~13층)	84A	4				
		84A-1	32				
		84B	64				
		84C	32				
	3군 (다락층, 2~5층)	84A	16				
		84A-1	16	15	63	128	
		84B	32				
		84C	14				

■ 공동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 및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258호실은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별 1건씩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1인당 최대 3개 군으로 3건의 청약 가능)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2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분양광고 오피스텔 평형,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은 갑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계약 시 교부하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생활 대지사용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세대별, 근생/판매시설의 각 실별 대지사용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차이 등은 적정 할애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향후 지분이 변동되는 일이 없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별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며 (2014.12.03. 개정)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외벽면적 등은 공용면적에 가산됩니다.
- 오피스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및 지상층 일부 공용부분 등 포함)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로 표기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통신실, 방재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균등한 분양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호실수는 시행위탁자 및 건축주관 시행위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의사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의 위치에 따라 코어 및 계단실 등의 공용부의 형태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 납부 중도금액은 총 분양금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중도금 납입일수 1일 이상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일일 및 장소,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 및 등기비용 등을 준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 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제3자 명의로 입금 시 사전에 반드시 오피스텔 분양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하며, 환불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물 분양에 따른 취득 및 법적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전매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